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2년 03월 14일 장문혁 의원이 발의하고, 2022년 0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제2조(정의) 부분 “민간위탁”과 “수탁기관” 정의를 상위법을 근거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근거로 민간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 나. 기존 수탁기관 정의에서 ‘관내 및 주소요건’ 부분을 삭제(안 제2조제3호)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의 “민간위탁”과 “수탁기관”的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의 “수탁기관”의 정의에서는
기존 조례 상 “관내 및 주소 요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임.

○ 조례안 제2조제3호의 “수탁기관의 정의”와 관련,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개인”을
“군 소재 또는 군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 한정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달리
수탁기관의 대상을 축소한 부분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참고자료(관계법령)

「지방자치법」